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849호 2014년 4월 11일(목)

고 시

○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
「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한 법률」 제6조(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(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·고시 합니다.

2014년 4월 11일

속 초 시 장

1.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현황

지구명	위 치	지정내용			지 정 사 유	비고
		유형	등급	면적(m ²)		
노학21	교동 산236-26번지일원	붕괴 위험지역	D	2,770	급경사지 붕괴위험	

2.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: 속초시청

3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○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
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-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
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우리 시 안전재난산림과와 협의하여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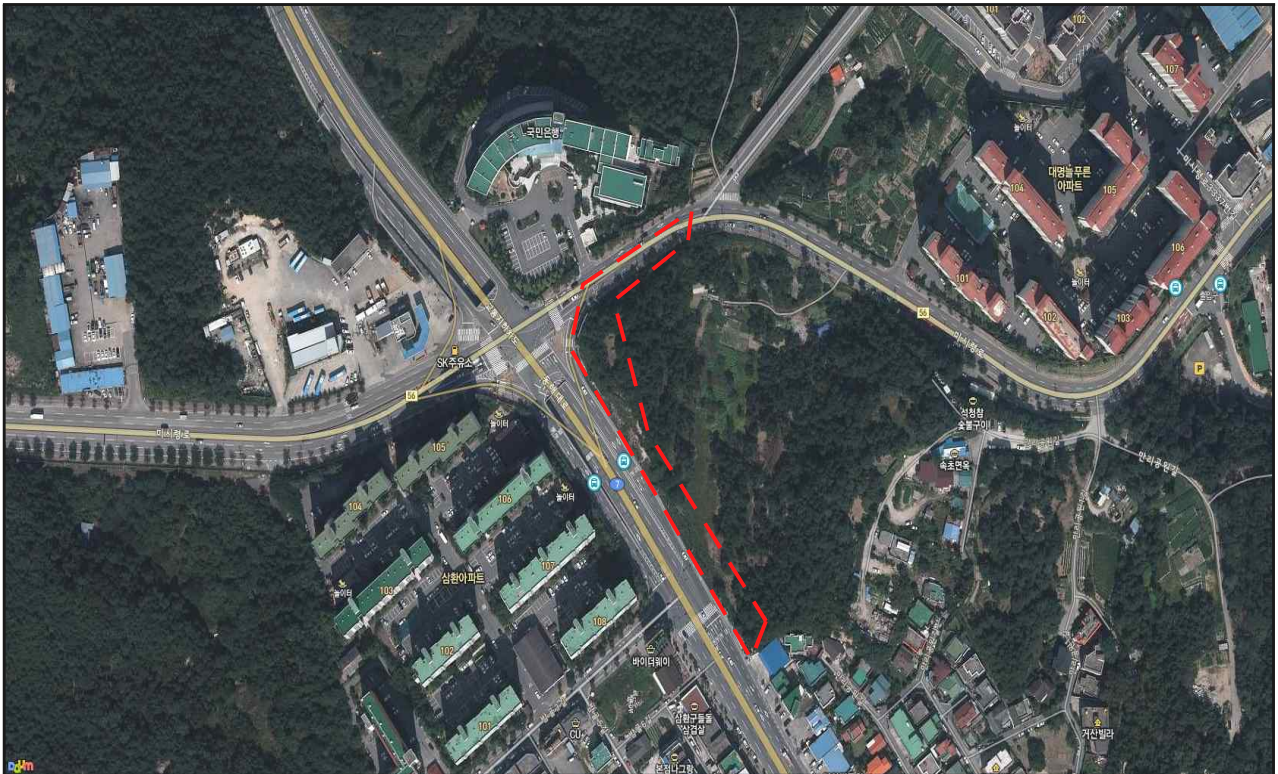
4.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: 2014. 4. 11.

5. 의견 제출 및 문의처 : 속초시청 안전재난산림과(☎ 639-2403)

붙임 : 편입예상용지도 및 토지조서

(붙임: 1) 위치도 및 현황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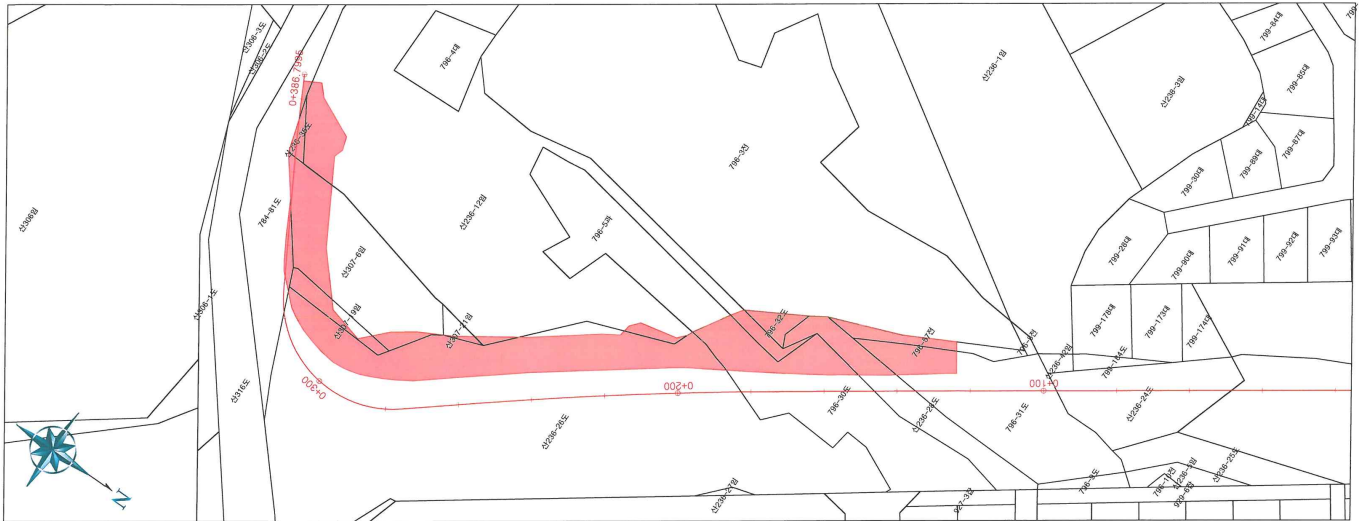
위 치 도 : 속초시 교동 산236-26번지 일원(삼환아파트 건너편)



전경사진



(붙임: 2) 편입(예상) 용지도



(붙임: 3) 편입(예상) 토지조서 : 2,770m² (12필지)

순번	토지소재	지번	지목	면적 (㎡)	편입예상 (㎡)	소유자	
						주소	성명
1	교통	796-31	도	1,342	175	국토해양부	국
2	"	796-57	전	153	94	국토해양부	국
3	"	산236-28	도	520	120	국토해양부	국
4	"	796-32	도	74	74	국토해양부	국
5	"	796-30	도	1,367	337	국토해양부	국
6	"	산236-26	도	5,864	1,088	국토해양부	국
7	"	산236-12	도	13,932	324	800-14럭키아파트2동 103호	심증식 외 8인
8	"	산307-21	임	62	9	국토해양부	국
9	"	산307-6	임	1,095	363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-1 주공아파트 203동 203호	박정환
10	"	산307-19	임	165	102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8-1 주공아파트 203동 203호	박정환
11	"	784-81	도	2,199	47	속초시	국
12	"	산236-35	도	37	37	800-14럭키아파트2동 103호	심증식 외 8인
계				26,810	2,770		